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. 12. 11 선고 2018가단344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무변론(피고 1. 3. 5.에 대하여)

2018. 11. 20.(피고 2. 4.에 대하여)

판결 선고2018. 12. 1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. 5. 23. 접수 제282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피고1.3.5.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피고2.4.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강신영

별지